



## 대만과 네팔편



○ 공효영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전문연구원  
✉ [hykong@klri.re.kr](mailto:hykong@klri.re.kr)

# 대만

## Taiwan



### I. 대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투자자보호

중화민국 입법원(Legislative Yuan)은 2020년 5월 22일 「증권투자자 및 선물거래자보호법(SFIPA)」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행정명령에 의해 6월 10일에 공포되었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SFIPA는 2002년에 제정되어 2009년 5월에 주요 개정을 거쳤다.

2020년 6월에 개정, 공포된 SFIPA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다.

첫째, 이사 및 관리자의 실격 제도가 대만에서 처음으로 공식 도입되었다. 2009년 법개정 당시 증권선물투자자보호센터(SFIPC)를 허가하는 제10-1조가 추가되어 만약 이사나 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법률 및 규정, 회사정관의 조항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경우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상장사의 부적합한 이사나 관리자를 그 직에서 해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지난 십수 년간 SFIPC가 제기한 소송들과 관련하여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과거 임기 중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현재 임기 중인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지, 또는 SFIPC가 재임 기간 동안 회사에 손해를 끼친 퇴직이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분쟁들이었다. 더욱이 일부의 경우에는 해임소송이 제기되어 사임한 직후 곧바로 이사직에 재선출되기도 했다. 법원이 이사에 대한 해임 판결을 내려도 여전히 차기에 재

선출될 수 있었는데, 이번 제10-1조의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었다.

이제 SFIPC는 퇴직한 이사를 고소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전임기간 동안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 현직의 이사를 해고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법원이 이사나 관리자를 해임하는 판결을 내린 경우 해당인은 향후 3년간 대만증권거래소(TWSE), 타이페이거래소(TPEX) 또는 신흥주식거래소(ESM)에 등록된 기업에 이사나 관리자로서 재직할 수 없다.

둘째, 개정된 법은 내부자 거래 및 시장 조작에 관여하는 행위에 대해 SFIPC가 대표소송 또는 해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다. 과거 수십 년 동안 내부자 거래 또는 시장 조작이 대표소송이나 해임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있었고 그에 따라 판결의 결과도 달라졌지만, SFIPA의 제10-1조의 개정으로 이에 대한 분쟁은 일단락되었다.

셋째, SFIPA는 대만증권거래소와 타이페이거래소에 등록된 기업부터 신흥주식거래소에 등록된 기업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넷째, 또 다른 중요한 개정은 이 개정이 소급효과를 가져올 것(사후법)이라는 것이다. 개정법의 제40-1조에 사실상의 소급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개정 조항은 SFIPC가 제기하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은 2020년 제16회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총회에 참석한 회원기관들이 제공한 ALIN Legislative News 가운데 대만 편(저자: Andrew Jen-Guang Lin, National Taiwan University College of Law)을 번역·편집한 것임.

### II. 대만 중앙유행전염병지휘센터,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 발표

2020년 4월 1일, 대만 중앙유행전염병지휘센터(CECC)는 코로나 양성 환자에 대한 정보 공개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 「정부정보자유법」 제5조에 따라 정부의 정보는 적극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거나 공개를 요청하는 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2. 정부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반에 제공되거나, 개인의 요구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3. 「전염병관리법」 제7조에 따라 주무부처는 전염병 발생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하고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전염병의 발생이나 대유행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통제하여 추가 전염을 예방한다.
4. 「전염병관리법」 제10조의 원칙에 따라 전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의심환자의 이름과 의료기록, 병력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병원균에 의한 중증 폐렴의 예방·치료·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2)조에 따라 전염병 대유행 예방 기간 동안에는 CECC 지휘센터장이 방역을 목적으로 개인의 위반 행위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기타 필요한 예방조치 및 예방행위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CECC는 5월 28일에 ‘개인정보 보호 및 전염병 조사를 위한 코로나 접촉정보기반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소의 소유주들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자를 지정해야 한다. CECC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를 수집하는 개인이나 기관은다음의 사항을 정보 제공자에게 명료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1.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제
2. 수집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보건당국의 요청으로 코로나 관련 조사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음
3. 수집정보 유형: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의 수집은 최소침해원칙을 준수해야함
4. 개인정보 사용기간: 개인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28일 후에 삭제됨
5. 개인정보 사용주체 및 사용방식: 수집기관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염병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조사 및 연락을 위해 주무보건당국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수집대상이 요구할 수 있는 혜택과 권리
7. 개인정보제공의 거부 시: 개인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장소 출입 또는 해당 활동에 참여가 불가할 수 있음.

지역사회 감염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지 않고 지역사회 내의 전파 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해 CECC는 대중행사의 관객 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국내 규제를 완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글은 2020년 제16회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총회에 참석한 회원기관들이 제공한 ALIN Legislative News 가운데 대만 편(Science & Technology Law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제공)을 번역·편집한 것임.

# 네팔

## Nepal



### I. 네팔의 기업 및 환경에 관한 신규제정법

최근 네팔은 기업 및 환경 분야의 법률과 규정을 다수 제정하고 있다. 일부는 특정 분야의 준거법들을 조문화하기 위해 구법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고, 일부는 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분야를 규제·감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1. 환경 관련 법률

「2019 환경보호법」은 「1997 환경보호법」을 대체하여 제정되었으며, 모든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호하며, 오염유발자의 환경오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개발과 환경 간의 균형, 자연 및 환경,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제한, 그리고 기후변화라는 과제의 직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제정된 「환경보호법」에는 환경영향평가, 오염관리, 지구온난화, 국가유산과 환경보호지역의 보전, 법률 위반 시 벌금 및 보상 등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환경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제환경기준 및 의무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었다.

마찬가지로 「1993 산림법」은 「2019 산림법」으로 대체되었다. 신법은 정부가 산림, 산림보호구역, 지역림, 파트너십 산림, 임대림, 종교림 등을 관리함에 따라 국유림에 관한 현행법을 개정·통합하고, 사유림 및 국유림, 도시림을 증진하는 한편 야생동물과 환경, 분수계 및 생물다양성을 보호·촉진·이용하여 국가 번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19 산림법」에는 국유림 분계선의 토지 소유권, 토지 이용 및 경계, 정부 관리 삼림, 산림보호구역, 지역림, 파트너십 산림, 그 밖에 다양한 산림의 분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지역 이용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국유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 야생동물의 불법사냥 방지, 임업품 밀수 방지, 산림유산의 보호 등을 위한 국유림무장경비청(AFGS)도 설치했다. 산림법 위반에 대한 형벌도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नेपाल정부가 맡게 된다.

## 2. 경제 관련 법률

「2017 산업기업법」을 대체하는 「2020 산업기업법」은 이용가능한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여 우호적이고 경쟁력 있는 제조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을 통해 산업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과 고용 기회를 증대시키며, 쉽고 예측가능하며 효과적인 산업 관리와 진취적이고 강력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산업의 등록 및 규제, 산업 및 고정자산의 분류에 관한 조항, 산업 및 투자 촉진 위원회, 산업의 종류에 따른 면제, 양허, 시설에 관한 조항, 서비스일원화센터에 관한 조항, 부실 산업, 처벌 및 항소 등에 관한 조항을 담고 있다.

「2019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법」은 नेपाल의 사법역사상 새로운 발전으로서 원가 또는 일반 가격대

미만의 수입품의 예상치 않은 또는 부자연스러운 수입 물량의 증가, 또는 보조금 지원 상품의 대량 수입 등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세이프가드 조치 조항을 규정하여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नेपाल의 산업부문을 증진하여 강력한 국가경제를 수립하고자 제정되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세이프가드 조치 및 조치 기간, 세이프가드 조치의 해제, 임시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조항, 반덤핑 관세 및 부과 기간, 반덤핑 관세 임시 부과에 관한 조항, 상계조치, 보조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는 제품의 수입 금지, 상계관세 부과 및 부과 기간, 상계관세 임시 부과에 관한 조항, 조사 및 불만제기에 관한 조항, 입증책임, 보고서 작성, 제품의 일반 가격 및 수입가격의 고정, 조사의 취소에 관한 규정, 조정위원회 및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조치에 관한 기타 규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새롭게 제정된 환경 및 경제 분야 법률들은 새로운 원칙들을 채택하였으며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영역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사법심사나 사후 입법평가 등을 통해 확인된 해당 분야 법률들에 필요한 개혁사항들이 이번에 제정된 법률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नेपाल은 이런 방식으로 환경 분야 및 경제 분야의 법률을 재개정하여 법률 시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편 नेपाल 의회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이전 및 민관협력을 규정하는 「2019년 외국인 투자 및 기술이전에 관한 법」과 「2019년 민관파트너십법」을 제정하였다.

이 글은 2020년 제16회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총회에 참석한 회원기관들이 제공한 ALIN Legislative News 가운데 नेपाल 편(Nepal Law Commission 제공)을 번역·편집한 것임.